

##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### 제안이유

- 중소기업육성자금·용자조건에 대하여 용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던 용자기간을 1년간으로 연장 개정.

### 첨부

1.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##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5항중 “1회에 한하여 6개월”을 “1회에 한하여 1년간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